

숨은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첫걸음 시작

- 민간중심의 ‘기술규제정책포럼’ 출범 -

-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발굴과 기술규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‘기술규제정책포럼’을 출범했다.

< 기술규제 >

- ◇ 정부가 국민안전, 소비자 및 환경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,
 - 규정한 제품, 서비스, 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절차*로, 객관적·명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.
 - * 샘플링, 시험, 검사, 평가, 검증, 등록, 인정, 인증, 인·허가, 마크, 표시사항 등.
- 예) 공동주택(아파트) 층간소음 규제, 식품의 표시기준,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등.

- 국가기술표준원은 10. 27.(월)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, 규제개혁위원인 김태운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기술규제 연구기관, 기업과 산업별 협의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『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』을 열었다.
- 포럼 위원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배 김&장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, 전문 기술분야 쟁점 검토를 위해 화학·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.

- 이번 포럼에서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애로 사례를 발표했고,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.

○ 기업애로 사례로는

- ① (신산업 진입규제) 원격 건강관리(mobile healthcare)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,
- ② (과도한 규제) 휴대폰의 재활용 수거기준 합리화,
- ③ (중복 규제)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(X-선 촬영기 등)에 규제 단일화,
- ④ (규제 공백) 나노 소재와 제품에 대한 규제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. [참고 2 참조]

○ 제도개선 토론에서는

- ① 기업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(김태운 한양대학교 교수)
- ②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 (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),
- ③ 융합신제품 개발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신속인증제도 (이노베이션 패스웨이)* 도입 (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),
- ④ 정부가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의 보완 필요성(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) 등을 논의 했다. [참고3 참조]

* 이노베이션 패스웨이(innovation pathway): 기업이 기존규제로 해결하기 힘든 신제품 개발할 때 정부가 해당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 적용하는 제도.

-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“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분야 규제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술규제정책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하며 “앞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정책포럼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.

<참고자료 1> 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 프로그램(안).

<참고자료 2> 기업 애로 사례.

<참고자료 3> 패널토론 요지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진상언 연구사(☎043-870-5556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 프로그램(안)

□ 행사 프로그램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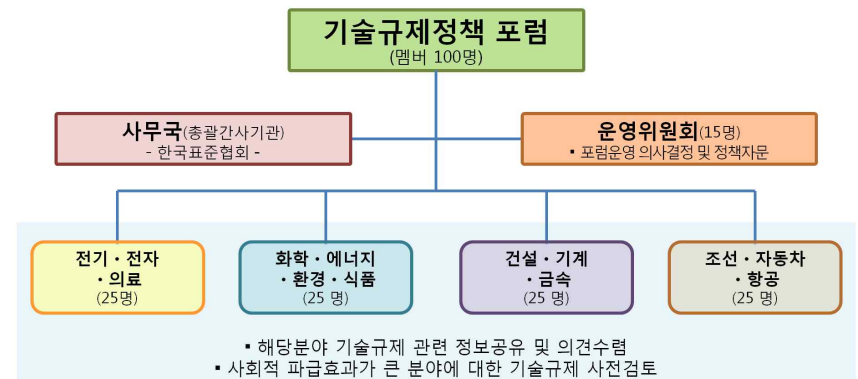
【 10. 27(월) 】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4:00 ~ 14:05 (5분)	개회	사회자
14:05 ~ 14:10 (5분)	개회사	국가기술표준원장
14:10 ~ 14:15 (5분)	축사	국무조정실
14:15 ~ 14:30 (15분)	기술규제정책포럼 소개	기술규제조정과장
14:30 ~ 15:00 (30분)	기술규제정책의 의의와 방향	김태운 교수
15:00 ~ 15:20 (20분)	커피 브레이크	-
15:20 ~ 16:55 (95분)	패널토의 (패널소개 (10분) 및 사례 발표 (35분), 기술규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 (50분))	패널 (8명)
16:55 ~ 17:00 (5분)	폐회	사회자

□ 패널 명단(안)

구 분	성 명	소 속 및 직 급	비 고
도 피니언리더	김태운	한양대 교수(규제개혁위원회 위원)	좌장
	김병배	김&장 미국변호사(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)	위원장
정책전문기관	고동수	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	
	이광호	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	
	황인혁	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	
피규제자	강상진	화학분야 중소기업 (㈜코셀 대표)	
	박순길	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	
	이경상	대한상공회의소 실장	

□ 기술규제정책포럼 구성



참고 2

기업 애로 사례

1. 전자업계 신산업 진입규제 및 과도한 규제 (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)
 - 법령 : 「의료기기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, 보건복지부),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(환경부)
 - 내용 : 모바일 헬스케어 규제완화, 휴대폰의 재활용 수거기준 합리화 등
2.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관련 과도한 규제 (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)
 - 법령 : 「원자력안전법」 (원자력안전위원회)
 - 내용 : X레이 촬영기 등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리에 관한 규제 단일화
3.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중복규제 (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)
 - 법령 :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 (산업부), 「환경보건법」 (환경부)
 - 내용 : 부처간(산업부 및 환경부)의 기술기준 불일치로 인한 애로
 - * 최근 환경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중복규제 문제가 해소됨 ('14.9.24)
4. 환경 관련 과도한 규제 ((주)쉬즈케미칼 컨설팅)
 - 법령 :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화학물질 관리법」 (환경부)
 - 내용 : 대응 준비의 어려움, 영업비밀 침해, 정보공유 기피, 등록비 문제 등
5. 환경 관련 과도한 규제 ((주)코셀)
 - 법령 :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화학물질 관리법」 (환경부)
 - 내용 : 연구개발용 소량물질 등록면제, 방유벽 설치기준,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
6. 규제 공백에 따른 나노산업의 애로사항 (바이테리얼즈)
 - 내용 : 나노 소재 및 제품에 대한 규제 부재로 인한 제품 판매 애로
7. 불합리한 중소기업 기술규제 (중소기업 옴부즈만)
 - 내용 : 의료 전자 의무기록 관리·보존 등 5개 사례

참고 3

패널토론 요지

1. 제도적/법률적 측면에서의 기술규제정책포럼의 필요성 (김병배 김&장 미국변호사)
 - 규제개혁의 일반적인 주기 및 절차, 향후 포럼 활동의 결과물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제안
2. 기술혁신/산업발전 저해사례 (김태윤 한양대 교수)
 -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술규제의 역진성 사례
3.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 (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 -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, 1국가 1인정기구 구현을 통한 중복인증 해소 필요
4. 규제 시스템의 문제(positive/negative) (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 - 민간이 정부가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문제점과,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
5. 기술규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중요성 (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 -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대응이 뒤처져 혼란을 겪게 되는 기술지체 현상의 원인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처 방안
6. 신기술관련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(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)
 - 무인택배, 무인자동차, 스마트 헬스케어 등 기존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합신제품 개발 추이에 대응한 관련 규제의 정비 및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(innovation pathway) 제도 도입의 필요성
7. 기업 경쟁력 저해/기업부담 완화 (박순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)
 -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건강 보조 또는 운동 목적의 제품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
 - 스마트폰의 경제적 가치로 수거·재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미국 EU 등과 같이 통신·사무기기 군으로 재분류 필요
8. 화평법 시행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우려 (강상진 ㈜코셀 대표)
 - 제조·수입자 및 사용·판매자 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조항에 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으며, 강제적인 정보 공유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상충